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근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02
----------	-------

발의연월일 : 2024. 3. 7.

발 의 자 : 김근태 · 권성동 · 지성호
임병헌 · 최연숙 · 이태규
정희용 · 태영호 · 최승재
강대식 · 최재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은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간접비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간접비의 조정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도 간접비를 통하여 직접비의 부족분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

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개별”을 “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개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별”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등 개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등의”를 “및 제8항에 따른 간접비의 조정 등의”로 한다.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② (생략)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u>개별</u>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u>개별</u>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 ⑦ (생략) <u><신 설></u>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u>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개별</u> ----- ----- ----- 2. ----- ----- ----- ----- <u>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등 개별</u>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u>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u>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등의 세 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 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⑨ ----- ----- -----<u>및 제8항</u> <u>에 따른 간접비의 조정 등의</u>-- ----- -----
--	--